

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○ 「도서관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조항 등을 정비하고,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「도서관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조문 정비 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9조 및 안 제15조)

○ 종전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명칭을 도서관위원회로 변경 (안 제3장 및 안 제9조)

○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(안 제13조)

5. 검토의견

- 상위법령인 「도서관법」이 2022년 12월 8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필요적 조치이며,
- 조례안 제13조2항의 신설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게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참여 확대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수당지급 근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필요적 조치로,
-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